

##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,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“대책위원회”)를 총장 직속 기구로 두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 및 임기)**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<개정 2017.09.25>

③ 위원은 보직이 없는 교원 중에서 기획조정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④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, 제4조에 의한 활동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.

**제3조(기능)**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

1. 입시공정 관리 대책 수립
2. 입시관리의 주요과정 감시
3. 입시감사 위원의 선정
4. 편입학 시험의 절차 감시
5. 기타 입시의 공정관리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

**제4조(활동기간)** 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부터 익년 8월말까지로 한다.

**제5조(업무관장)** 대책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7.09.25>

**제6조(재정)**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세부사항)** 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